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19. 11. 26(화) 10:00

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복지교육국 소관)



**복지건설위원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49호
- 나. 제 출 자 : 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19. 11. 15.

## 2. 제안이유

청년 시설(청년활동공간 「청춘빨당」)의 공유 시설(코인세탁방) 조성으로 해당 공유 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를 위해 이용료 징수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청년 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정(안 제19조)
- 나. 청년 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(안 제20조 및 별표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 136조, 139조
  - 2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제6항
  - 3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4항
  - 4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21조
  - 5)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0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부서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2019. 10. 8. ~ 2019. 10. 29. (20일 이상)
- 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: 별첨
- 4) 규제사전심사 : 별도시행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 : 별도시행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평가 : 별도시행(여성가족과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조례안 제안

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시설(청년활동공간 「청춘빨당」)의 공유 시설(코인세탁방) 조성으로 이용료 징수를 위해 이용료 징수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

### 나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탁 재산의 이용료 징수는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제19조(청년시설의 이용)와 제20조(청년시설의 이용료)를 각각 신설하는 안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 관계법령

#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**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20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20.>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10.2.4., 2015.1.20.>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<신설 2010.2.4., 2015.1.20.>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., 2015.1.20.>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., 2015.1.20.>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2.4., 2015.1.20.>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08.12.26.]

#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**제21조(수탁재산의 위탁료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7.20.>

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. <신설 2015.7.20., 2016.7.12., 2017.7.26.>

### 1. 수입

가.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, 이용료 등

나.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·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(轉貸)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

다.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·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

### 2. 지출

가.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,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

나.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,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. <신설 2015.7.20.>

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 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,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. <개정 2010.8.4., 2013.6.21., 2015.7.20., 2016.7.12.>

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4., 2013.6.21., 2015.7.20.>

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3.6.21., 2014.11.19., 2015.7.20., 2017.7.26.>

[전문개정 2009.4.24.]

[제목개정 2015.7.20.]